

<p>본 조례의 제정근거인,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以上으로 檢討report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本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학교群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异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658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4.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(11時 16分)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.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條例廢</p>	<p>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廢止理由는 現行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條例는 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 것으로서 教育法施行令의 改正에 依據 廉止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教育法施行令도 역시 마찬가지로 93年 11月 13日 大統領令 14004號로 改正 公布가 된 내용입니다.</p> <p>그 主要骨子는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에 關한條例를 廉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廢止根據는 教育法施行令 第112條第8項第2號에 의한 것입니다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report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鄭文孝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report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제안사유</p> <p>현행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關한조례는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關한 것으로서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('93.11.13, 대통령령 제14004호)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關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</p> <p>4. 근거</p> <p>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2항.</p> <p>5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행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,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74.1.24 조례 제815호로 제정, 그 이후 1989.11.20 제14차의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에 關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
---	---